

평창군환경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4. 11. 26(금) 평창군수(기획감사실장)
- 나. 회부일자 : 2004. 12. 21(화)
- 다. 상정일자 : 2004. 12. 23(목) 제11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4. 12. 2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가. 제안이유

- 날로 훼손되어가고 있는 우리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을 위한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을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관련조례의 근간이 되는 『평창군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제안이유

- 군수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한 분야별 책무를 규정(안 제4조)
-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한 평창군 환경기본 계획 수립을 규정(안 제8조)
- 환경여건에 적합한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시 지역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도록 함.(안 제11조)

-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활동에 공헌한 군민, 단체에 표창장 및 부상·시상금 지급근거를 마련(안 제14조)
- 환경단체나 연구기관이 행하는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조사·연구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환경보전시책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기관인 평창군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18조)
-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개인 등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토록 함(안 제25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박태영)

가. 본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 평창군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을 위한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하고,
-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 천혜의 자연환경에 대한 훼손이 점차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군 환경분야의 현상과 같은 성격을 부여하고 있는 내용으로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검토되었습니다.

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 매5년마다 평창군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과
- 군의 환경보전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한 평창군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조사와 정보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기타 법령의 형식, 자구등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